



##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물류시설법 시행령 )

[시행 2025. 1. 3.] [대통령령 제35167호, 2024. 12. 31.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 (첨단물류과) 044-201-4007, 4008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가공 · 조립시설의 규모 등)** ①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"이란 가공 · 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.

② 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"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09. 9. 9., 2009. 12. 14., 2012. 7. 19., 2013. 3. 23., 2017. 3. 29., 2021. 2. 19.>

1.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창고
2.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(냉동 · 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)
3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 · 처리 시설
4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
5. 「철도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· 하역 및 보관 시설
6.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③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 · 제조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2. 7. 19., 2013. 3. 23., 2021. 2. 19.>

1. 삭제 <2012. 2. 2.>
  2.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(축산물의 도축 · 가공 · 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한다)
  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
  4.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(냉동 · 냉장업 시설 및 선상가공업시설은 제외한다)
  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 · 가공시설
- ④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0. 2. 8., 2013. 3. 23.>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
  2.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(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)
  - 2의2.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의 시설
  3.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###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

**제3조(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)** ①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용수 · 에너지 ·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"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 ·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